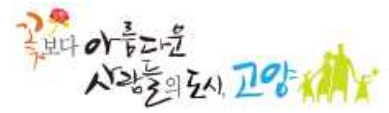


【제 1320 호】



2016년 11월 4일 (금)

고양시보

차 례

입법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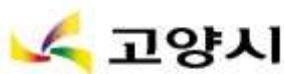
고양시 공고 제2016-1608호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고양시 공고 제2016-1612호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 시

고양시 고시 제2016-268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2호선, 3-46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20
----------------------	---	----

공 고

고양시 공고 제2016-1599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변경 공고	23
고양시 공고 제2016-1617호	행신II-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수립(변경)안 주민공람·공고	29
고양시 차량등록사업소 공고 제2016-241호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37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수익사업 규정 신설, 입장료·대관료 규정 정비 등 어린이박물관 운영 중 나타난 미비한 점을 개정하여 어린이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운영재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
- 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6조의2)
- 다. 장애등급에 따른 무료입장 대상을 조정함(안 제17조제3호)
- 라. 의상자·의사자유족을 무료입장 대상에 신설함(안 제17조제10호)
- 마. 입장료 부분을 변경함(안 제16조제2항)
- 바. 대관료 부분을 변경함(안 제22조제2항)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년 1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 (문화예술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문화예술과 문화사업지원팀(031-8075-3395)

○ 팩 스 : 031-8075-492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운영재원 등) 박물관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지원금, 박물관사업 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수익사업) ① 박물관은 설립목적 범위에서 시와 협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수익사업의 수익금 배분은 협약으로 정하고 수익금은 사업종료 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박물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매점·기념품 판매소,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인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별표 1 제1호 표 중 입장료 감면 대상란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인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별표 1 제1호 표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단체관람(20명 이상) 인솔교사 입장료 면제 기준은 어린이 7명당 1명을 무료로 한다.
2. 입장료 감면 대상자는 관련 증명서(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고양시 내 박물관 및 미술관, 어린이 놀이·교육시설, 박람회 등과 제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2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

별표 2 제1호 표 중 다목적실의 대관료 “100,000원” 을 “50,000원” 으로 하고, 같은 표 중 소강당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강당	평일	8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대/객석 144석 ▪ 방송시설 ▪ 1회 4시간 기준 ▪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적용 ▪ 초과 시간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 20,000원 - 주말, 공휴일 : 25,000원 ▪ 대관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 7회 이상 ~ 14회 미만 : 20퍼센트 감면 - 월 14회 이상 : 40퍼센트 감면
	주말, 공휴일	100,000원	

비고

1. 박물관 휴관일에는 대관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문화예술과
입안자	과장 성명	문화예술과장 정영안
	팀장 성명	문화사업지원팀장 윤병열
	담당자 성명·전화	김승열 (031-8075-3395)

현행		개정안	
<p>[별표 1] 고양시 어린이박물관 입장료 및 수강료(제16조제2항 관련)</p> <p>1. 입장료</p>			
영아·유아	구분	금액	비고
		개인	단체 (20명 이상)
일반	민3세(36개월) 미만	무료	무료
	민3세(36개월) 이상	5000원	3,500원
입장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인등록이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인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특수인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인무수행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교육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교원으로서 학교장의 협조요청이 있는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입장료	감면	무료	무료
대상	관련 증명서	관련 증명서	지참
<p>※ 단체관람(20명 이상) 인솔교사 입장료 면제 기준 : 어린이 7명당 1명 무료</p> <p>※ 입장료 감면 대상자는 관련 증명서(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등) 제시</p>			
<p>2. 수강료 (표 생략)</p>			
<p>1. 단체관람(20명 이상) 인솔교사 입장료 면제 기준은 어린이 7명당 1명을 무료로 한다.</p> <p>2. 입장료 감면 대상자는 관련 증명서(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p> <p>3. 고양시 내 박물관 및 미술관 어린이 놀이·교육시설, 박물관 등과 제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20퍼센트까지 감면할 수 있다.</p> <p>2. 수강료 (표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대관료 및 임대료(제22조제2항 관련)					
1. 대관료					
층수	시 설 명	대 관 료	비 고		
1층	다목적실	1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터 좌석 일 대관료 		
	기획진시실	1,000원/㎡	일 대관료		
	체험교육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터 좌석 일 대관료 		
3층	소강당	3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대/객석 144석 방송시설 1회 4시간 기준 사용료임 		
		평일	8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대/객석 144석 방송시설 1회 4시간 기준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적용 초과 시간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일 : 20,000원 - 주말, 공휴일 : 25,000원 	
		주말, 공휴일	1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관료 감면 - 월 7회 이상 ~ 14회 미만 : 20퍼센트 감면 - 월 14회 이상 : 40퍼센트 감면 	
비고					
1. 박물관 휴관일에는 대관을 하지 아니한다.					
2. 임대료 (표 현행과 같음)					
[별표 2] 대관료 및 임대료(제22조제2항 관련)					
1. 대관료					
층수	시 설 명	대 관 료	비 고		
1층	다목적실	1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터 좌석 일 대관료 		
	기획진시실	1,000원/㎡	일 대관료		
	체험교육실	1,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터 좌석 일 대관료 		
3층	소강당	3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대/객석 144석 방송시설 1회 4시간 기준 사용료임 		
2. 임대료 (표 생략)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우리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고양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고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국내 숙박비 지급 기준 현실화 및 국내 여비(운임·숙박비) 실비 지급제 도입 등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여비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의 경우 여비 실비 지급을 규정함.(안 제6조제4호)
- 나. 국내 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를 실제 사용한 비용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정비함.(안 별표 1)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6.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6년 11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고양시장(회계과)

- 주 소 :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0(주교동)
- 전 화 : 회계과 경리팀 (031-8075-2492)
- 팩 스 : 031-8075-4909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따르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따르지 아니한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는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따르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따르지 아니한다.
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회 계 과
입안자	담당관 성명	회계과장 김 석 진
	팀장 성명	경리팀장 박 상 원
	담당자 성명·전화	조 승 현 (031-8075-2492)

[별표 1]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비고

1.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인사혁신처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 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는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p>〈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따르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 	<p>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p> <p>.....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따르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p> <p>〈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따르지 아니한다.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규정」 제4조”는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따르지 아니한다.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

현행	개정안
<p>은 조 제4항중 “<u>안전행정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u>”는 없는 것으로 보며, <u>같은 조 제3항은 따르지 아니한다.</u></p> <p>8. 「<u>공무원 여비 규정</u>」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u>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u>」은 「<u>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u>」으로, 「<u>공무원 보수규정</u>」은 「<u>지방공무원 보수규정</u>」으로, 「<u>공무원 임용령</u>」은 「<u>지방공무원 임용령</u>」으로, “<u>일반임기제 공무원</u>”은 “<u>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u>”, “<u>전문임기제 공무원</u>”은 “<u>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u>”으로 한다.</p>	<p>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u>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u>”는 따르지 아니한다.</p> <p>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u>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u>」”은 “「<u>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u>」”으로, “「<u>공무원보수규정</u>」”은 “「<u>지방공무원 보수규정</u>」”으로, “「<u>공무원 임용령</u>」”은 “「<u>지방공무원 임용령</u>」”으로, “<u>일반임기제 공무원</u>”은 “<u>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u>”으로, “<u>전문임기제 공무원</u>”은 “<u>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u>”으로 한다.</p>

현행	개정안
----	-----

【별표 1】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숙박비 (1야당)
제1 호	1등급	1등급	정액	정액	46,000 <small>(지방자치단체장을 실비로 지급)</small>
제2 호	2등급	2등급	정액	정액	30,000

비고

1. 구분의 제1호 및 제2호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여비지급 구분표
를 적용한다.
2. 항공운임이 2개 이상의 등급으로 구
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비고에 따라 기획재정
부장관과 안전행정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 설〉

3. 자동차(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
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
을 기준으로 하고, 선박운임은 국토
교통부장관의 인가요금을 기준으로

【별표 1】

국내 여비 지급표

(단위 : 원)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숙박비 (1박당)
제1 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실비
제2 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실비 <small>(상한액: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small>

비고

〈삭 제〉

1.
.....
.....
.....인사혁신처장.....
.....
2.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사용하여 항공
운임을 절약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
비의 50퍼센트를 추가로 지급하되, 추
가로 지급하는 일비 총액은 공적 항공
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범위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버스운임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
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
사·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에서 정해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한다.

현행	개정안
<p><u>한다.</u></p> <p>4. <u>철도운임란 중 1등급은 특실 정액, 2등급은 일반실 정액을 말하며, 해당 철도운임란의 등급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적용한다.</u></p> <p>5. <u>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u></p>	<p>4. <u>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u></p> <p>5.</p>

고양시 고시 제2016- 268호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2호선, 3-46호선]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우리시 일산서구 대화동 1050-185번지 일원의 한국국제전시장 1단계 지구단위계획(변경) - 특별 계획 구역 6(L1) 세부계획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1-2호선, 3-46호선] 사업에 대하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및 제88조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75-3144)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4일
고양시장

1.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050-18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2호선, 대로3-46호선]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규모				연장 (m)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결정	대로	1	2	35	6,086 (480)	
금회시행	대로	1	2	3.3	7.6	26.4㎡
결정	대로	3	46	28~31	450	
금회시행	대로	3	46	3.0	113.38	338.6㎡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27 하남빌딩
- 성명 : (주)사람과 미래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인가일로부터 24개월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참조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 "바"항과 동일

아.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다, 바"항과 같음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도로노선별 편입용지 집계표(㎡)

시설명	소재지		지 번	지목	지적(㎡)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관리관계			비고	
	구	동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대(주)로 1-2	2	일산 서구	대화동	1050 - 184	도	2,526.3	26.4	고양시	국				
소 계						2,526.3	26.4						
대(보)로 3-46	1	일산 서구	대화동	1050 - 176	공	20,158.6	117.2	고양시	국				
	2	일산 서구	대화동	1050 - 184	도	2,526.3	31.7	고양시	국				
	3	일산 서구	대화동	1050 - 185	대	19,553.4	189.7	주식회사 사람과 미래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 118 (퇴계동, 미래타워)	케이비부 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수탁 자	신탁원부 제2016-1 689호
소 계						42,238.3	338.6						
합 계						42,238.3	365						

○ 편입 지장물조사

일련번호	지장물위치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관계인			비고
	소재지	지번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관리 관계	
1	①	일산서구 대화동	1050 176	보차도 경계석	200×250×1,000	40.00	m	고양시	국				
	②			자전거 도로포장	T=7CM	70.66	㎡						
	③			보도 경계석	150×150×1,000	78.77	m						
	④			보도포장	T=6CM	186.42	㎡						
	⑤			콘크리트 포장	T=20CM	37.52	㎡						
	⑥			가로등		2.00	개소						
	⑦			경찰맨홀	사각	1.00	개소						
	⑦			오수맨홀	사각	2.00	개소						
	⑧			신호등 제어기		1.00	개소						
	⑧			한전BOX		1.00	개소						
	①			스트로브젯	H3.0×W1.5	4.00	주						
②			왕벚나무	H4.0×B12	3.00	주							
1	①	일산서구 대화동	1050 184	안전철크스	H=900×W:3000	6.00	m	고양시	국				
	②			보차도 경계석	200×300×1,000	49.00	m						
	③			자전거도로 포장	T=7CM	41.79	㎡						
2	④			보도 경계석	150×150×1,000	32.66	m						
	⑤			보도포장	T=6CM	159.99	㎡						
	⑥			도로 경계석	120×150×1,000	18.46	m						
	④			차량 신호등		1.00	개소						
	④			보행자 신호등		1.00	개소						
	⑤			제수변		2.00	개소						
	⑤			오수맨홀		1.00	개소						
	⑥			SK맨홀		1.00	개소						
	⑥			경찰맨홀		2.00	개소						
	⑦			가로등 전열기		1.00	개소						
	⑦			한전BOX		1.00	개소						
	⑧			블라드		9.00	개소						
	①			중국단풍	H4.5×R30	1.00	주						
	②			홍단풍	H2.5×R8	2.00	주						
③			스트로브젯	H4.0×W2.0	2.00	주							
2	④			중국단풍	H3.0×R10	2.00	주						
	④			중국단풍	H4.0×R20	1.00	주						
	⑤			홍단풍	H2.5×R8	3.00	주						
	⑥			중국단풍	H3.0×R6	16.00	주						
	⑦			회화나무	H3.0×R15	2.00	주						
	⑦			회화나무	H4.0×R20	1.00	주						
	3	①	일산서구 대화동	1050 185	보차도 경계석	200×300×1,000	50.00	m	주식회사사람과미래	강원도 춘천시 퇴계로118 (퇴계동, 미래타워)			
②				자전거도로 포장	T=7CM	89.71	㎡						
③				보도경계석	150×150×1,000	96.80	m						
④				보도포장	T=6CM	153.39	㎡						
⑤				콘크리트포장	T=20CM	39.61	㎡						
⑥				가로등		2.00	개소						
⑦				전기판		1.00	개소						
⑦				오수맨홀		1.00	개소						
⑧				왕벚나무	H4.0×B12	6.00	주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변경 공고

공고 제2016-1599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2016년도 소하천(중모루천) 정비시행계획의 수립 편입부지 면적 변경 사유로 인해 다음과 같이 소하천(중모루천) 정비시행계획 변경을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4일

고양시장 (직인)

소하천명	사업 개요								공고변경사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량(m)		공사기간			공사목적
			시작하는 지점	끝나는 지점	축제(築堤)	호안(護岸)	착공	준공		
중모루천	당초	중모루천 정비공사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67-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92-8	좌안 180 우안 174.5	좌안 180 우안 174.5	2016.04	2018.12	수해 예방	편입면적 변경
		중모루천 정비공사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67-1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92-8	좌안 180 우안 174.5	좌안 180 우안 174.5	2016.04	2018.12	수해 예방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중모루천 정비공사 (변경) 세부시행계획

1. 소하천 공사의 명칭 : 중모루천 정비공사
2. 소하천 정비시행계획 변경 사유 : 편입부지 면적 변경
3. 소하천 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소하천공사의 목적
 - 해당 지역의 소하천을 정비하여 자연재해(집중호우, 홍수피해)시 발생할 수 있는 주변지역 농경지 및 주택 침수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 주민의 안정된 생활여건 제공 및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소하천공사의 개요
 - 사업량 : 소하천정비 L=261.5m
 - 사업비 : 2,100백만원
4. 금회 소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267-1 ~ 도내동 92-8번지 일원
5. 소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시행자 : 고양시 덕양구청장(환경녹지과장)
 - 주소 :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04번길 13(화정동)
6. 소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 연월일
 - 2016년 예정. ~ 착수일부터 24개월 예정
7.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붙임참조
8. 준공된 소하천 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관리자 : 고양시 덕양구청장(환경녹지과장)

9. 폐천부지 발생 예상면적 : 해당없음

10. 실시설계도서 :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비치

11. 예정공정표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12. 사업비 및 자금조달 계획서

(금액 : 백만원)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비고
2,100	100		100	1,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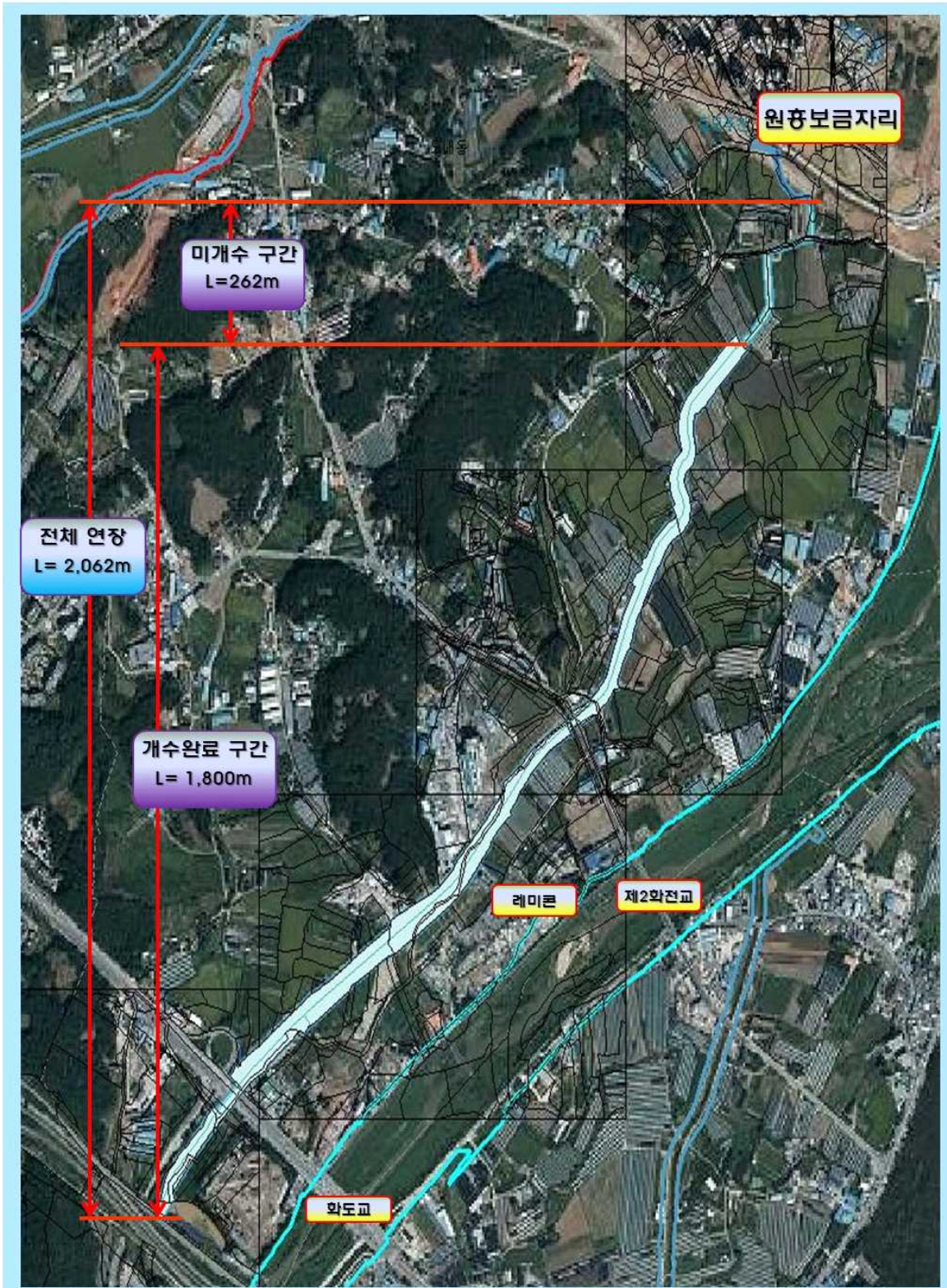
13. 소하천공사 편입토지 및 물건조서 열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 덕양구청 환경녹지과 생태하천팀
- 이의신청 : 편입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열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사항

-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 덕양구청 환경녹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8075-5254)

○ 위치도



토 지 조 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면적(㎡)			시설 구분	소유자		비고
					포락	비포락	계		주소	성명	
계	22필지			43,544	당초 변경	610 1,780	3,814 2,651	4,424 4,431			
1	덕양구 도내동	267-1	천	10,111	당초 변경	49 49	219 219	268 268	하천		고양시
2	"	268	전	3,322	당초 변경	91 181	255 164	346 345	하천	산67	김*규
3	"	269-5	전	3,707	당초 변경	39 118	228 151	267 269	하천	82	김*순
4	"	243-4	답	1,412	당초 변경	14 155	309 170	323 325	하천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11 목동 신기지 아파트 1014-1101	박*순
5	"	243-1	답	1,160	당초 변경	45 201	445 227	490 428	하천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311 목동 신기지 아파트 1014-1101	박*순
6	"	242	답	2,962	당초 변경	- 2	28 23	28 25	하천	성사동 421-11	김*규
7	"	269-2	전	3,471	당초 변경	3 305	1,078 849	1,081 1,154	하천	82	김*순
8	"	269-1	전	3,079	당초 변경	55 209	411 252	466 461	하천	덕양구 화중루 219, 102동 1407호(화정동, 달빛마을)	장*일 외 1인
9	"	269-8	전	731	당초 변경	73 202	426 297	499 499	하천	덕양구 화중루 219, 102동 1407호(화정동, 달빛마을)	장*일 외 1인
10	"	269-6	창	132	당초 변경	0 0	20 20	20 20	하천	덕양구 화중루 219, 102동 1407호(화정동, 달빛마을)	장*일 외 1인
11	"	269-7	도	25	당초 변경	0 0	14 14	14 14	하천	덕양구 화중루 219, 102동 1407호(화정동, 달빛마을)	장*일 외 1인
12	"	895-2	구	5,187	당초 변경	37 37	145 145	182 182	하천		국(건설 부)
13	"	894-7	도	4,351	당초 변경	72 72	39 39	111 111	하천		국 (국토교 통부)
14	"	273-7	전	115	당초 변경	2 -	3 5	5 5	하천	덕양구 행신동 692 무원마을 1011-609	김*규
15	"	273-8	도	19	당초 변경	6 -	2 8	8 8	하천	덕양구 흥도로178번길 163-24(도내동)	김*규
16	"	273-5	전	811	당초 변경	3 -	4 8	7 8	하천	덕양구 도내동 364-23	김*규
17	"	269-9	전	863	당초 변경	- -	27 27	27 27	하천	덕양구 서정마을2로7번길 5 301호(행신동)	박*희
18	"	272-2	전	214	당초 변경	55 123	68 1	123 124	하천	85	장*원
19	"	272	전	1,491	당초 변경	8 21	37 25	45 46	하천	85	장*원
20	"	92-6	답	161	당초 변경	21 24	7 4	28 28	하천	덕양구 도내동 131-2	장*원
21	"	92-32	전	163	당초 변경	1 30	31 1	32 31	하천	68	이*순 외 1인
22	"	92-31	답	57	당초 변경	36 51	18 2	54 53	하천	덕양구 도내동 131-2	장*원

행신 II-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안 주민공람 · 공고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73-1번지 일원의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수립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을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고양시청 도시재생과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1월 04일

고 양 시 장

1. 공람기간 : 2016. 11.04. ~ 2016. 12.06.
2. 공람장소 : 고양시 도시재생과(☎ 031-8075-3180)
3. 공람내용

가. 정비구역

- 1) 정비사업의 명칭 : 행신 II-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구 분	정비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 경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행신 II-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73-1번지 일대	13,087.58	감) 25.58	13,062.00	-

3) 변경사유

변 경 사 유
지구계 측량에 따라서 면적을 정정하고 주택수요를 반영한 대형평수의 소형진환, 높이 변경, 용적률 상향 등을 주요내용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환경의 질을 높이고자 함

4. 정비계획

가.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087.58	감) 25.58	13,062.00	100.00	-
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3,087.58	감) 25.58	13,062.00	100.00	-

나. 토지이용계획

구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3,087.58	감) 25.58	13,062.00	100.00	-
정비기반시설	소계	893.96	증) 13.54	907.50	6.95	-
	도로	893.96	증) 13.54	907.50	6.95	-
획지	소계	12,193.62	감) 39.12	12,154.50	93.05	-
	주거용지(공동주택)	12,193.62	감) 39.12	12,154.50	93.05	-

다.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

○ 도로 변경결정 조서

결정구분	규모				기능	연장(m)	위치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점	종점				
기정	중로	1	78	24~27	보조간선도로	536	행신동 181-6답	행신동 248-10답	일반도로	-	2003.11.12. (건고 제267호)	-
기정	소로	2류	71	8	국지도로	174	대1-8 (행신동 1019도)	소3-87 (행신동 174-24전)	일반도로	-	2006.02.26. (경고 제5206호)	-
기정	소로	2류	72	8~11	국지도로	238	소3-87 (행신동 232-4대)	소3-87 (행신동 205-37임)	일반도로	-	1978.03.21. (고고 제14호)	-
기정	소로	2류	294	8	국지도로	376	소2-72 (행신동 234-5대)	소2-78 (행신동 282-71임)	일반도로	-	2006.02.26. (경고 제5206호)	-
기정	소로	3류	87	8~11	국지도로	498	행신동 173-4	행신동 1045도	일반도로	-	1978.03.21. (고고 제14호)	-
기정	소로	3류	88	6~10	국지도로	250	행신동 1019도	행신동 206-1	일반도로	-	1978.03.21. (고고 제14호)	-

라.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결정구분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1BL	13,062.00	덕양구 행신동 173-1번지 일원	12,193.62	감) 25.58	12,154.50	-
	②			덕양구 행신동 206-1번지 일원	893.96	증) 13.54	907.50	-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역구분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구역명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행신 II-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13,062.00	22	-	-	22	-	

바.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관한 계획

○ 기 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①	덕양구 행신동 173-1번지 일원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22.43%이하	-
		용 적 률	◦ 228.99%이하	-
		높 이	◦ 70m 이하(평균:15층)	-
		배 치	◦ 공동주택 1동의 길이는 4호 연립 이내 ◦ 단지중앙부에 휴게공간의 조성 권장 ◦ 24m 도로변으로부터 폭40m 구간 직각배치 ◦ 공공조경 설치 및 보행환경 개선	-
		형 태	◦ 입면적은 최고 3,500㎡ 이하	-
		색 채	◦ 주조색 : 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 보조색 : 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 강조색 : 원색 도는 강한색	-
		건축한계선	◦ 2m	-

○ 변 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①	덕양구 행신동 173-1번지 일원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건 폐 율	◦ 19.80%이하	-
		용 적 률	◦ 229.97%이하	-
		높 이	◦ 70m 이하(평균:17층)	-
		배 치	◦ 공동주택 1동의 길이는 4호 연립 이내 ◦ 단지중앙부에 휴게공간의 조성 권장 ◦ 공공조경 설치 및 보행환경 개선	-
		형 태	◦ 입면적은 최고 3,500㎡ 이하	-
		색 채	◦ 주조색 : 밝은색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 보조색 : 2가지 이내의 2차색 이상의 혼합색 ◦ 강조색 : 원색 도는 강한색	-
		건축한계선	◦ 2~3m	-

2) 인구,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건설계획

○ 기 정

구 분		공 동 주 택				비 고
		합 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인구수(인)	현 황	692	659	33	-	-
	계 획	630	-	491	139	2.67인/세대
세대수(세대)	현 황	186	182	4	-	-
	계 획	236	-	184	52	50세대 증가

○ 변 경

구 분		공 동 주 택				비 고
		합 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인구수(인)	현 황	692	659	33	-	-
	계 획	719	349	370	-	2.64인/세대
세대수(세대)	현 황	186	182	4	-	-
	계 획	272	132	140	-	86세대 증가

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기 정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①	◦ 소로3-88	◦ 건축 한계선 : 2m	◦ 공공조경 설치
②	◦ 소로3-87	◦ 건축 한계선 : 2m	◦ 차도(가감속차선) 및 공공조경 설치
③	◦ 소로2-72	◦ 건축 한계선 : 2m	◦ 차도(가감속차선) 및 보도 설치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으며, 건축한계선의 의해 후퇴된 부분 중 보도 및 차도로 이용되는 부분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담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 변 경

도면번호	위 치	계획내용	비 고
①	◦ 소로3-88	◦ 건축 한계선 : 3m	◦ 공공조경 설치
②	◦ 소로3-87	◦ 건축 한계선 : 3m	◦ 차도(가감속차선) 및 공공조경 설치
③	◦ 소로2-72	◦ 건축 한계선 : 2~3m	◦ 차도(가감속차선) 및 보도 설치

※ 건축한계선이 지정된 대지에는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건축한계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할 수 없으며, 건축한계선의 의해 후퇴된 부분 중 보도 및 차도로 이용되는 부분에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담장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일체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

사.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기 정

구 분	기 준		법 정 (㎡, 개소)	계 획 (㎡, 개소)	비 고	
	의무대상	소요면적 산정방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관리사무소	50세대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36-50세대)×0.05㎡ ◦ 100㎡초과시 100㎡로 설치가능 	19.3	20	-
	어린이 놀이터	50세대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0㎡+(236-100세대)×1.0㎡ ◦ 1개소의 면적 200㎡ 이상 	436	444.9	-
	근린 생활시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6×6㎡ 이하 ◦ 500㎡미만시 500㎡로 설치가능 	1,416이하	960	-
	주민 운동시설 (실외체육시설)	500세대이상	◦ 300㎡+[(건립세대수-500세대)/200세대]×150㎡	해당없음	-	-
	경로당	100세대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6-150세대)×0.1㎡ ◦ 300㎡초과시 300㎡로 설치가능 	28.6	30	-
	주민 공동시설	300세대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건립세대수-300세대)×0.1㎡ ◦ 300㎡ 초과시 300㎡로 설치가능 	해당없음	-	-
	보육시설	500세대이상	◦ 모든단지, 21인X4.29㎡	90.1	96.0	-
	문고	300세대이상	◦ 33㎡이상, 6석이상, 1,000권 이상	해당없음	34.0	-
기본계획	문고	1개소 설치			34.0	-
	보육시설	1개소 설치			96.0	-
	경로당	1개소 설치			30.0	-

○ 변 경

구 분	기 준		법 정 (㎡, 개소)	계 획 (㎡, 개소)	비 고		
	의무대상	소요면적 산정방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관리사무소	50세대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272-50세대)×0.05㎡ ◦ 100㎡초과시 100㎡로 설치가능 	21.10	26.61	-	
	근린 생활시설	-	-	-	960	-	
	주민 공동 시설	합계	150세대 ~ 300세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당 3.125㎡이상 - 272 × 3.125 = 850㎡ 	850이상	1,075.52	-
		경로당				77.2	-
		어린이 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설치 (150~300세대의 경우) - 경로당 50+(272 × 0.1) = 77.2 		604.69	-
		어린이집 (보육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설치(300~500세대의 경우) 		99.78	-
		주민 운동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설치(500세대 이상의 경우) 		243.69	-
		작은 도서관				50.16	-
유치원	2,000세대이상	◦ 해당없음	-	-	-		

※ 관련조항의 삭제로 인해 일부 시설은 설치할 의무 없음

아. 환경보전 및 재난 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경, 중경, 연접부에 대한 도시경관형성 단지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기준 제시 	결정도서에 별도 첨부
환경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시 가배수로 및 침사지 등을 설치하고 공사차량의 운행에 따른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기적 살수 및 세륜세차시설설치, 운영시 발생하는 오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하고, 난방 및 취사에 사용되는 사용연료는 청정연료를 사용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억제, 발생 폐기물은 분리수거 후 고양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 처리할 계획이며, 사업완료시까지 사후환경관리를 철저히 행함으로써 본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에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사업의 목적에 부합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환경성검토결과에 별도 첨부
재난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발 기상이변에 의한 홍수 등을 대비한 지반조성계획 수립 	환경성검토결과에 별도 첨부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규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소음 규제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아침, 저녁 (05:00~08:00, 18:00~22:00)</th> <th>낮 (08:00~18:00)</th> <th>밤 (22:00~05:00)</th> </tr> </thead> <tbody> <tr> <td>주거지역내 공사장</td> <td>60dB(A) 이하</td> <td>65dB(A) 이하</td> <td>50dB(A) 이하</td> </tr> </tbody> </table> <p>주)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환경부) 비고) 주거지역,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의 지역은 공휴일에 한하여 -5dB을 규제기준에 보정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진동 규제기준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주간</th> <th>심 야</th> </tr> </thead> <tbody> <tr> <td>주거지역</td> <td>65dB(V) 이하</td> <td>60dB(V) 이하</td> </tr> </tbody> </table> <p>주)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환경부)</p>	구 분	아침, 저녁 (05:00~08:00, 18:00~22:00)	낮 (08:00~18:00)	밤 (22:00~05:00)	주거지역내 공사장	60dB(A) 이하	65dB(A) 이하	50dB(A) 이하	구 분	주간	심 야	주거지역	65dB(V) 이하	60dB(V) 이하	-
	구 분	아침, 저녁 (05:00~08:00, 18:00~22:00)	낮 (08:00~18:00)	밤 (22:00~05:00)												
	주거지역내 공사장	60dB(A) 이하	65dB(A) 이하	50dB(A) 이하												
구 분	주간	심 야														
주거지역	65dB(V) 이하	60dB(V)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음·진동 발생 저감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 및 공법의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제33조)에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와 ‘소음진동규제법(제49조2)’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 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를 사용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현장 방음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타기, 굴삭기 등 발생소음이 크고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이동식 방음벽 또는 방음커버 등을 활용함으로써 소음저감효과를 높임 등·하교시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도록 임시 통학로 설치 공사에 따르는 분진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살수장치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주변구역임을 표지판 등으로 공지하고 경적 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차.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기 정

구 분	계 획	비 고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구역 결정고시 후 4년 이내	-

○ 변 경

구 분	계 획	비 고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구역지정(변경) 및 정비계획수립(변경) 결정고시 후 4년 이내	-

카.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구 분	계 획	비 고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

5. 건축계획(안)

가. 건축개요

사 업 명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II-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대지위치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173-1번지 일원			
	기 정	변 경		
대지면적	12,193.62㎡	12,154.50㎡		
연 면 적	지상층	27,922.43㎡		
	지하층	9,766.40㎡		
	합 계	37,688.83㎡		
용 적 륜	228.99%	229.97%	상한용적률 : 230% 이하	
건축면적	2,735.13㎡	2,405.70㎡		
건 폐 율	22.43%	19.80%	정비계획상 : 30% 이하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층 수	지하1층 / 지상21층	지하2층 / 지상2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주차대수	308대	353대	법정 : 286대	
세 대 수	59a형	-	132세대	
	84형	-	140세대	
	110a형	158세대	-	
	110b형	13세대	-	
	110c형	13세대	-	
	123형	52세대	-	
	계	236세대	272세대	

나. 건축배치도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도서 참조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제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 규정에 의거하여 운행정지명령을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공고
2. 공고기간 : 2016.11.04. ~ 2016.11.21.(17일간)
3. 공고대상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참조
4. 공고내용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명령 받은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 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및 제82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의문 사항은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2팀 (☎031-8075-477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운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1부.

2016. 11. 04.

고양시차량등록사업소장

은행정지명령 자동차 현황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대번호	은행정지명령 사유	은행정지명령일자	비고
1	경기84나5098	포터초장축더블캡	KMFXXKD7BPYU402194	소유자 신청	2016.11.01.	
2	89머7852	그랜드 스타렉스	KMFWBX7KBFU714455	소유자 신청	2016.10.31.	
3	서울45노-8242	마르샤2.0오토매틱	KMHHEF31PPSU009333	소유자 신청	2016.10.31.	
4	86조8977	포터II냉동합차	KMFZSZ7KAGU300658	소유자 신청	2016.10.28.	
5	04무5558	그랜저XG	KMHFV41CPYA082144	소유자 신청	2016.10.27.	